영등포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2007. 5. 1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윈원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ㅇ 제안일 : 2007년 5월 11일

○ 회부일 : 2007년 5월 14일

2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제1호)
-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을 재산등록사항"으로 개정 (안 제3조제1항제3호)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변경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구 소속 5 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7쪽)

(2) 입법예고 생략

- 생략사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 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영등포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에 대한 공직자윤리 업무는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계층적심사제 가 도입되어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 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는 기존과 같이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 원회"의 소관이지만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서울특별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은 투명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공직자윤리 법」제21조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u>운영등에관한</u>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u>운영에 관한 조례"</u>로 개정하는 것은 제명은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도록 표현되고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에 "등"자를 붙이므로 제명을 개정할특별한 이유가 없어 현행 제명을 띄어쓰기 만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계법령"을 "다른 법 령"으로 정비하고

제4조제2항 중 "임기내"를 "임기 내"하고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띄어 쓰며

제4조제3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정비하며 안 제6조제2항 단서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띄어 쓰고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를 "법 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정비하며

제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띄어 쓰며

안 제10조 중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서 약칭한바 없어 현행을 띄어쓰기만 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 자윤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부 칙"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5. 18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1. 신·구조문대비표

- 2. 관련법규
- 3. 수정의견대비표

[붙임 1]

신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3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u> </u>	공직자윤리법_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영등포구 공직			
자윤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	사항과 법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음)	
2. 2인의 위원은 <u>4</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	2		<u>영등포구의회</u>
<u>회</u> (이하 "구의회	회"라 한다) 의원 1명			
과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	라 한다) 1명으로 위			
촉 또는 임명현	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의 규건	정에 의하여 구의회	③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추하고자 할 경우에는			
<u>구의회</u> 의 추천을 받아) 야 한다.	구의회의장		
제3조 (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u>1. 법 제8조제1항의</u>	l 규정에 의한 등록사	<삭 제>		
항의 심사와 기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비 <u>처리</u>			

현	행	개	정	안
2. <u>법 제8조제11항</u> 후단의 규정에 의 한 승인		2. <u>법 제8조</u> 조 	레12항	
3. 법 제10조제1형	l에 규정하는 재산공	3. <u>재산등록</u> 시	<u> }항</u>	
<u>개대상공직자에</u> 사와 그 결과의	대한 등록사항 심 처리			
4. (생 략)		4. (현행과 길	<u> 음</u>)	
5. (생 략)		5. (현행과 길	<u> </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left(\frac{2}{1}\right)$	
1. <u>구 소속공무원</u>	및 그 퇴직공직자에	1. <u>구 소속 5</u>	급 이하 공무	무원과 관할 공
관한 사항		<u> 직유관단</u>	체의 임·직원	<u>1</u>
2. <u>구의회 의원 및</u> 그 퇴직공직자 ⁶	구의회 소속공무원 과 게 관한 사항	2. <u>구</u> 의회 소설 	 녹 5급 이하 	공무원
제6조 (위원회의 회	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	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②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	
사항은 <u>재적위원</u> 3	분의 2이상의 찬성	출석위	원	
으로 의결한다.				
1. <u>법 제8조제6항</u> 의	의 규정에 의한 조사	1.법 제8조제	<u> 7항</u>	
	<u>8조제11항</u> 의 규정에		법 제8조제1	<u> 2항</u>
의한 조사의뢰의	의 승인			
2. ~ 3. (생 략)		2. ~ 3. (현형	생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법 제29조에 해당되	4. <u>법 제24조</u>		
는 자에 대한 고 ③ (생 략)	- 발	 ③ (현행과 같음	음)	
1. ~ 3. (생 략)		1. ~ 3. (현형	탱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	
제10조 (준용) 이 조리	셰에서 정한 사항 이	제10조(준용) -		
외에 <u>법시행</u>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u>법 시행</u>		
직자윤리법시행령 및		법 시행령 및 법		
<u>칙</u>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2]

관련법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098호], 시행일 2007.6.29,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 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8, 2006.12.28>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⑥ (생략)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⑧ ~ ① (생략)

②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31>

① ~ ① (생략)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 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6.12.28>

- 1. 경고 및 시정조치
-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제1항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 또는 오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2006.12.28>
-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본조신설 1993.6.11]

[전문개정 1993.6.11]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1.1.26>

-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1993.6.11, 1997.12.13>
-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93.6.11>
-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개정 2001.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 ② ~ ④ (생략)
-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5.5.18, 2006.12.28>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2. 제6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7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 2의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 2의3. 제8조제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 7.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 7의2.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7의3. 제1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7의4.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한 때 7의5.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 7의6. 제14조의10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때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93.6.11]

제23조 삭제 <2001.7.24>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 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5조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5.18]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5.5.18>
[본조신설 1993.6.11]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본조신설 1993.6.11]

-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 ②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4.12.31, 2001.1.26, 2005.5.18>
 -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본조신설 1993.6.11]

[붙임 3]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u>및운영등에관한조례</u>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u> (이하 "법"	제1조(목적) 「 <u>공직자윤리법</u>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조(구성)① (현행과 같음)	제2조(구성) ①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u>각호</u> 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u>각 호</u>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2인의 위원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u> (이하	2 <u>영등포구의회</u>	2. (개정안과 같음)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영등포구 소속공무		
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u>각호</u>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호선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구의회</u>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의회의장</u>	② <u>각 호</u> ③ (개정안과 같음)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u>각호</u> 의 사항을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u>각 호</u>
심사 • 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	1. <u>〈삭 제〉</u>	1. (개정안과 같음)
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법 제8조제12항	2. (개정안과 같음)
3.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3. 재산등록사항	3. (개정안과 같음)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5.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다른 법령
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	1. (개정안과 같음)
 항	체의 임·직원	
2.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2. (개정안과 같음)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②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u>재직중</u> 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으로</u> 한다.		②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②	②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다음 <u>각호</u> 의 사항은 <u>재적위원</u>	출석위원	<u>각 호</u> <u>출석위원</u>
<u>3분의 2이상</u>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 3분의 2 이상</u>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1. <u>법 제8조제7항</u>	1. <u>법 제8조제7항</u>
<u>법 제8조제11항</u> 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	법 제8조제12항	법 제8조제12항
인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 ~ 3. (개정안과 같음)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4. 법 제24조	4. 법 제24조부터 법제29조까지
대한 고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u> 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u>범위 안</u>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u>시행</u>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u>공직자윤리법시행</u>	법 시행 법 시행령 및	법 시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	법 시행규칙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다.		
	<u>부 칙</u>	<u> </u>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구정정 내역

구분	자구정정 전	자구정정 후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u>운영에</u>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	<u>각호</u>	<u>각 호</u>
제3조제1항	<u>각호</u>	각 호
제3조제5항	<u>기타</u> 이 조례 또는 <u>관계법령</u>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u>다른법령</u>
제4조제2항	임기내 재직중	임기 내 재직 중
제4조제3항	잔임기간으로	남은 임기로
제6조제2항	<u> 각호3분의 2이상</u>	<u>각 호3분의 2 이상</u>
제6조제2항 제4호	법 제24조 <u>내지</u> 법 제29조 <u>에</u>	법 제24조 <u>부터</u> 법 제29조 <u>까지</u>
제8조	범위안	범위 안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